

※「5류감염증」이란?

일본의 법률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즉 「감염병법」 이 있습니다. 감염병법에서 「감염병」이 일류감염병, 이류감염병, 삼류감염병, 사류감염병, 오류감염병, 신종플루 등 감염병, 지정감염병 및 신종플루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염증의 유형에 따라 규정(법률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2023년 5월 7일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플루 등 감염병」 분류 상당이었으나 2023년 5월 8일부터 「오류감염증」으로 변경됩니다.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법에 근거한 조치의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https://bit.ly/44hai3Z>

변경후의 기본적인 감염대책은?

개인이나 사업자의 판단이 기본으로 됩니다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손 씻기 등의 손 위생이나 환기는 기본적인 감염대책으로서 계속 유효

•유행기에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은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나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것 등이 효과적

※마스크 착용의 판단기준은 지금까지와 동일합니다.

<증상이 있을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주치의나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건강상담센터에서 상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 센터가 작성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센터
<https://www.hiecc.or.jp/soudan/emg/index.html?lang=kr>
언어 :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한국어, 타갈로그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보등에 대해서는, 이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홋카이도 도청 홈페이지
<https://www.pref.hokkaido.lg.jp/covid-19/index.html>



5류 감염증으로의 변경에 따른 포인트

증상이 있을 때·감염됐을 때는

주치이나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건강센터에 상담하세요

5월7일까지는

발열등의
증상이
있을때는

건강상담센터

양성자 등록 센터
(무료 키트 신청)

5월8일(예정)부터는

계속

종료

요양시의 상담처가 바뀝니다

악화시의
상담처는

양성자 건강 서포트
센터

참고
요양기간 7일간
※증상 소멸후 24시간 경과

건강상담센터
(상담센터를 통합)

참고
요양기간 5일간(권장)
※증상 소멸후 24시간 경과

검사나 의료비는 자기부담으로 됩니다

검사
의료비는

무료

※첫 진료는 제외

자기부감

기본적인 감염대책은?

개인이나 사업자의 판단이 기준으로 됩니다

-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 충분한 환기
- 밀접, 밀집, 밀폐의 회피
- 사람과의 거리 확보

- 그대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이나 환기는 감염 대책에 효과적
- 유행기에 고령자 등은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것이 유효

사업자

- 입장시 검온
- 입구에 소독액 설치·아크릴판 등 파티션의 설치

- 효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판단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다음의 대처는 종료 됩니다

- 자택 요양세트 송부 ○펄스 옥시미터 대여 ○숙박 요양 시설 ○무료 검사 사업